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9-02

# 수 원 고 등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20누10131 지방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A |
| |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 |
| 제 1 심 판 결 | 수원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구합69033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20. 6. 10. |
| 판 결 선 고 | 2020. 7. 22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10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9-02

## 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"대법원 판례도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성질상 승계취득으로 보고 있다(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3703 판결,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67227 판결 등 참조)."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